

‘화살총 피습’ 대처 논란에 ‘의무 내던져’ 비난 봇물

몸 사리는 경찰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발생한 화살총 습격사건 관련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인천 흥기난동 사건에 이어 또 한번 부실 대응으로 도마에 오른 모습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최근 화살총 습격사건 현장 지휘 적절성 조사를 위해 파출소 순찰팀장 A경감을 경무과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

A경감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16분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B(22)씨를 곧바로 검거하지 않는 등 현장 대응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경감을 비롯해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 7명은 몸을 숨긴 채로 사건 발생 10분이 지나도록 범인을 쫓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경찰관 중 한 명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질타가 쏟아졌다.

또한 7명의 경찰관이 몸을 숨긴 사이 B씨는 무기를 들고 도심을 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칫 무고한 시민이 다칠뻔 한 상황으로 이어져 비난 여론이 확산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증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사건 발생 후 해임됐다.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

경찰관 7명 범인 곧바로 검거 안해...직접 112 신고

그 사이 무기 들고 도심 활보...부실 대응 논란 확산

인천 흥기 난동 사건 현장 이탈 경찰관 2명은 해임

“훈련 받았나...경찰 부실함은 곧 시민의 불안감”

“영화도 아니고 맨 몸으로 어찌 막나” 옹호 의견도

음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에도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경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수에 사는 C(46)씨는 “경찰도 사람인지라 무서웠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훈련을 받은 분들인지 의심된다”고 했다.

직장인 D(30)씨도 “현장 경찰의 훈련 및 대응 부족 아닐까”라며 “경찰조차 대응 못하면 시민들이 길에서 저런 범죄자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경찰의 부실함은 곧 시민들의 불안감”이라고 우려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한 행위에 대해 “소방관이 소방서에 불 났다고 119에 신고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새벽 20대 남성이 여수 모 파출소에 쏜 공기 화살총. (사진 = 독자 제공)

다만 일각에서는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기습 상황에서 무장하지 않은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E(36)씨는 “상대는 총을 들고 있는데 영화도 아니고 맨 몸으로 어떤 경찰이 막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소방관도 맨 몸으로 불을 끄는 건 아니지 않나. 소방관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는 상황과 유사하다”며 “소방관 이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경찰을 옹호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도 일부는 “경찰학교에서 경찰관 스스로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배운다”, “본질은 경찰관서가 테러를 당했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한 행위에 대해, ‘경찰관 목숨은 2개, 3개라도 되느냐’고 적었다.

테이저건 제압에 인권위 진정...자칫했다간 소송까지

5차례 경고에도 칼 내려놓지 않아 테이저건으로 제압

인권단체 “공권력 과잉 행사 넘어선 국가의 폭력 사태”

경찰관들 “물리력 행사 기준·경특법 있지만 무용지물”

여수 화살총 피습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현장 대응을 두고 또다시 비판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할 때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4일 외국인 흉기 소지자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부역칼을 들고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베트남인 A(24)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5차례 경고에도 A씨가 부역칼을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을 쏘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인권단체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단체는 “경찰의 법 집행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준 규칙에 따르더라도 이번 경우는 공권력 과잉 행사를 넘어 국가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위험한 사람에 대한 범죄 억지력이 폭력으로 변질된 상황을 국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방패막이 삼은 행태다”고 비판했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인권위 진정 등이 이어지면 결국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 C씨는 “경찰이 베트남어로 경고하지 않았다거나 테이저건을 쏘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실과 동떨어진 비판”이라며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5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마약 사용 등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쏘았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권위 진정을 비롯해 추후 추가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의 또 다른 경찰 D씨도 “제압해야 하는 대상이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면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내 후배나 동기 중에도 과잉 진압을 이유로 징계나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많다”며 “그런 사례를 접할수록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칙대로 일해도 규칙이 보호해 주지 않는 상황에 시달리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동네 아저씨라고 조롱 받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의 대응하도록 돼 있다.

규칙을 보면 상대방 행위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순응 ▲소극 저항(비협조적) ▲적극 저항(공무집행 방해) ▲폭력적 공격(안력 사용해 체포 회피) ▲치명적 공격(흉기 등 이용해 위력 행사)의 순서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경찰이 각각 ▲수갑 ▲경찰봉 ▲분사기 ▲전기 충격기 ▲권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됐다. 현장 경찰관은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줌도 고의·중과실이 없고 수행이 불가피했다면 정상을 참작해 행사책임은 감경 혹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여전히 해당 규칙이나 법들이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칙대로 대응해도 사후 민사 소송이나 인권위 조사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20대 남성이 한 파출소 문 틈으로 화살총을 쏘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성은 약 12시간 뒤 파출소와 5km 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체포됐지만, 사건 당시 근무하던 경찰들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 집행에 따른 결과들은 정부, 특히 경찰 조직이 책임을 져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무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제대로 일을 해도 죄가 되고, 자신의 혐의 없음을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부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테이저건이나 총기 등 적절한 대처가 오히려 금기시되는 경찰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라며 “경찰이 합법적으로 정당한 적법 절차에 의해 집행했다면 그로 인한 사건 사고는 조직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일 하겠냐”라고 지적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